

파주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2
----------	-----

제출년월일 : 1998. 9

제 출 자 : 파주시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의 수를 파주시 정원조례에 포함하여 규정 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가. 전문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소속 상임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
- 나. 전문위원회는 일반직 사무에 대해서만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
- 다. 의회사무직원의 정수를 삭제하고 파주시정원조례에 명시
- 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따로 규칙으로 제정

파주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파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따로 파주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